

종합감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문화엑스포 종합감사 -

2022. 11. .

♠. 처분요구일람표

1.	업무추진비 지출 증빙서류 미비 (주의)	1
2.	임대료 산정 관련 (주의)	2
3.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부적정 (시정)	4
4.	시설공사 담보책임 미설정 및 하자검사 미이행 (주의)	5
5.	건축물 환기구 유지관리 소홀 (시정)	7
6.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 (시정)	11
7.	맞춤형 복지점수 정산 부적정 (시정)	13
8.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주의)	15
9.	평가 승인 및 사용 관련 복무 관리 소홀 (주의)	17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업무추진비 지출 증빙서류 미비
소 관 청 문화엑스포
관 계 부 서 ○○○○○○
내 용

(재)문화엑스포에서는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지침」 등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 기준」 II. 주요항목별 집행지침 3. ‘각 업무추진비 공통’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업무추진비로 건당 50만 원 이상 지출할 경우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야 한다.

그런데 문화엑스포에서는 소속직원과 유관기관에 대하여 의례적인 명절선물 구입을 업무추진비로 집행(3건)하면서 주된 상대방에 대한 내용을 증빙서류로써 첨부하지 아니하였다.

조치할 사항 문화엑스포 대표이사는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 의)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임대료 산정 관련
소 관 청 문화엑스포
관 계 부 서 ❀❀❀❀❀
내 용

(재)문화엑스포에서는 행정재산인 경주엑스포대공원 내 ♡♡♡♡♡ 등 4곳에 대하여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하여 운영하고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2018 공유재산 업무편람」,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8조, 제31조에 따르면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으며, 사용·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의 가격평가 등에 관하여는 일반재산의 대부재산의 평가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연간 사용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10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은 1천분의 40이상의 대부요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하며,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하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하도록 되어 있다.

□ 건물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당해 건물의 총 공용면적×(대부 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총 전용면적)

□ 부지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당해부지 총 공용면적×(대부 받은 자의 건물면적(전용·공용면적 합계)÷당해 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

따라서 문화엑스포에서는 0000. 0. 00. 엑스포대공원 내 ♡♡♡♡♡ 행정재산에 대한 유상사용·수익허가 입찰 시 공용면적(건물 00.0m²)을 포함하여 사용료를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추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0000. 0. 00. 엑스포대공원 내 ♡♡♡♡♡ 유상사용·수익허가 입찰 공고에 따른 추정가격을 관련규정에 따라 건물의 대부면적 00m²(전용 00m², 공용 00m²)와 토지의 대부면적 000m²(전용 000.0m², 공용 0m²)에 시가표준액과 공시지가를 곱하여 재산평가액을 산정한 후 대부요율을 곱하여 사용료를 산정하고 추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함에도 문화엑스포 제 규정인 「재단법인 문화엑스포 행사장·시설물 사용 및 입장료 징수에 관한 규칙」 [별표] 행사장부지 및 시설물 사용료 중 관람객 편의제공을 위한 신속한 사업자 모집을 한다는 명목으로 「기타 행사장 부지」에 적용되는 요율을 적용한 산출가격 0,000,000원(00m²×000원×364일)에 40%를 감액(「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5조, 제33조에 의거 행정재산 여섯 번째 입찰 최초가격 40%금액 체감)한 0,000,000원을 추정가격으로 입찰공고하고 0000. 0. 00. ◎◎◎과 사용·수익 계약(계약금액 0,000,000원)한 사실이 있으며, 이외 경주타워 내 ☆☆☆☆ 등 3개소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임대료 추정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공고 한 뒤 계약 하였다.

조치할 사항 문화엑스포 대표이사는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임대료 산정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 의)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부적정
소 관 청 문화엑스포
관 계 부 서 ○○○○○○
내 용

(재)문화엑스포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재단법인문화엑스포 회계규칙」 등에 따라 경주엑스포 대공원 내의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각종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르면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는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의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고, 계약상대자가 준공 또는 기성요청 시 집행 내역을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

그런데 (재)문화엑스포에서는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미만인 건설공사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000천 원을 과다 계상하는 등 사업 추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

조치할 사항 문화엑스포 대표이사는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 의)
- ② 과다 계상된 사업비 000,000원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에 따라 정산하는 등 적정하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 정)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시설공사 담보책임 미설정 및 하자검사 미이행
소 관 청	문화엑스포
관 계 부 서	◇◇◇◇◇◇
내 용	

(재)문화엑스포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재단법인문화엑스포 회계규칙」 등에 따라 경주엑스포 대공원 내의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각종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도급계약의 담보책임 존속기간 까지 하자검사 사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계약의 기준 및 절차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21조에 따르면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하고,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계약의 하자 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 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며, 하자검사를 하는 자는 계약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 하는 경우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제10절에 따르면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하자검사에 입회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는 경우에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 체결 시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하고, 하자보수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시설공사 등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는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재)문화엑스포에서는 0000. 0. 00. 계약한 '□□□□ 설치 및 보강공사'에 대하여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설정하지 않았고, 0000. 00. 00. 준공한 '☆☆☆☆ ☆☆ □□□□ 정비 용역'의 하자검사를 실시하거나 소속 직원에게 하자검사 사무를 위임하지 않았다.

그 결과 하자담보책임 미설정 및 하자검사 미이행 등으로 하자 발생 여부의 확인도 할 수 없게 되었으며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문화엑스포 대표이사는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 의)

[표] 기본등분포 활화중(건축구조기준)

(단위 : kN/m²)

용도	구조물의 부분	활하중	참고
지붕 (13)	가. 점유·사용하지 않는 지붕	1.0	유지관리 인력, 장비, 화분 적재 등 예상 시
	나. 산책로 용도	3.0	보도 면에 설치 (산책하는 사람의 하중만 예상되는 경우)
	다. 정원 및 집회 용도	5.0	보도 면에 설치 (사람의 집중, 물건 적치, 차량 진입 등 예상 시)
	라. 출입이 제한된 조경구역	1.0	
	마. 헬리콥터 이착륙장	5.0	

사람이나 차량의 접근이 용이한 대지와 도로·공원·광장 등 인접부에는 가급적 환기구를 배치하지 않아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안전난간, 조형물, 수목 등을 이용하여 사람이나 차량의 접근을 차단하거나, 사람이 올라설 수 없는 구조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환기구 덮개는 급작스러운 덮개 탈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강도¹⁾의 콘크리트 걸침턱에 덮개가 걸치는 구조로 하고, 걸침턱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 고정용 철물에 앵커를 설치하여야 하며, ‘환기구 덮개의 걸침턱 너비는 환기구가 이탈되지 않도록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환기구 덮개용 스틸그레이팅은 「산업표준화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 단체표준 중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에서 등록된 표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환기구 덮개 너비가 긴 경우 또는 연속되는 경우 안전성 확보를 위해 중간 지지대(H형강 등)로 보강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환기구 덮개, 지지구조 철물 및 연결재(볼트, 용접)에 균열이나 탈락 성상의 변화가 있는 경우 또는 관련법령에 점검주기가 도래한 경우, 건축주 또는 관리주체는 전문기관에 의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고, 환기구 덮개에 이상이 있는 경우 보수·보강·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건축주 및 관리주체는 환기구의 높이가 2미터 이하로써 접근이 가능하고, 설계하중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거나,

1) 콘크리트 걸침턱은 환기구 덮개 단부의 지압파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확인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안전휀스를 설치하고 경고판을 부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엑스포문화센터¹⁾는 경주엑스포대공원의 주 출입구 광장 전면부에 위치한 건축물로 관람객의 이동과 출입이 빈번하고, 건축물 전면부(좌, 우측)와 후면부에 깊이 6m의 환기구가 지상으로부터 20~30cm 높이로 74m 정도 설치되어 있다.

따라서 건축물 설계자는 환기구가 「건축구조기준」에 따라 ‘지붕’에 해당하는 설계하중을 적용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앞의 [표]와 같이 점유·사용하지 않는 경우 1.0kN/m^2 , 보도 면에 설치되는 경우로 산책하는 사람의 하중만 예상되면 3.0kN/m^2 , 사람의 집중, 물건 적치, 차량 진입 등 예상 시 5.0kN/m^2 의 설계하중이 적용되도록 설계하여야 하고,

건축물 관리주체는 관람객의 안전을 위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환기구를 적정하게 유지관리 하여야 하고, 환기구의 높이가 2미터 이하로 접근이 가능하고, 설계하중 확인이 곤란한 경우 안전휀스 및 경고판 설치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재)문화엑스포에서는 스틸그레이팅 덮개 일부가 탈락(파손)되거나 변형되어 유격이 발생하였고, 걸침턱 너비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거나, 걸침턱 고정철물이 앵커로 보강되어 있지 않는데도 감사일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등 환기구 유지관리에 소홀하였다.

또한 환기구 덮개 너비가 길고 연속되는 구조로 되어 있으나 중간 지지대(H형강 등)로 보강되어 있지 않고, 높이가 20~30cm에 불과해 아무런 통제 없이 관람객의 접근이 가능하며, 설계하중에 대한 확인 없이 물건을 지속적으로 적치(에어콘 실외기 등)하거나, 안전휀스 및 경고판을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1) 건립년도 2007년, 건축면적 4,758.7㎡, 연면적 10,381.9㎡, C,CONC+철골구조

그 결과 위 건축물 환기구 유지관리 소홀로 추락사고 발생 우려 등 경주엑스포 대공원 시설물 및 관람객의 안전관리가 소홀히 운영되고 있다.

조치할 사항 문화엑스포 대표이사는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 의)
- ② 환기구 유지관리 소홀사항은 「환기구 설계·시공·유지관리 가이드라인」 등에 따라 관람객 및 건축물 이용자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적정하게 조치하시는 등 환기구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시 정)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
소 관 청 문화엑스포
관 계 부 서 ○○○○○○
내 용

(재)문화엑스포에서는 부양가족이 있는 소속 직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재단법인문화엑스포 보수규칙」 제13조에 따르면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가족수당을 지급하며, 지급범위와 기준은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을 적용한다고 되어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르면 ‘부양가족’이란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되어있다.

그리고 가족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부양가족신고서를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되어있다.

따라서 직계존속에 대한 가족수당은 직계존속이 부양의무를 가진 직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며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을 때 지급대상이며, 부양가족 변동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변동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재)문화엑스포에서는 0000. 0월 ~ 0000. 0월 기간 동안 부모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는데도 소속직원 0명에게 가족수당 0,000천 원을 부적정하게 지급하였다.

또한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제5장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 2회 반기별로 해당기관(소속기관, 한시조직 등 포함)의 가족수당 지급 운영 실태를 자체 점검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가족수당을 지급받는 소속 공무원의 부양가족 변동 사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가족수당 지급 시 반영하여야 했다.

그런데 부양가족 변동사항에 대한 주기적인 확인을 하지 않아 가족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문화엑스포 대표이사는

- ①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고,(주 의)
- ② 부당하게 지급된 가족수당 0,000,000원을 회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 정)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맞춤형 복지점수 정산 부적정
소 관 청	문화엑스포
관 계 부 서	◆◆◆◆◆
내 용	

(재)문화엑스포에서는 소속 직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재단법인문화엑스포 직원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규정」 제2조에 따르면 맞춤형 복지제도 적용대상은 재단법인 문화엑스포에 소속하고 있는 직원으로 하며, 휴직 중이거나 국외에 파견중인 직원에 대하여는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규정 제5조에 따르면 기본복지점수는 소속직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고, 변동복지점수는 근무년수, 가족사항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으며, 가족사항으로 가족 수 산정은 가족수당 지급기준을 적용한다고 되어있다.

또한 같은 규정 제6조에 따르면 직위해제·면직·해임·파면·휴직·파견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 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재)문화엑스포에서는 휴직 등이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 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것이 타당하며, 가족수당 지급기준에 따른 가족 수를 적용하여 맞춤형 복지점수를 부여하여야 한다.

그런데 (재)문화엑스포에서는 0000 ~ 0000년 기간 동안 휴직자 등 0명이 맞춤형 복지점수 0,000천원을 초과하여 사용하였으나, 이를 정산하지 아니하는 등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을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문화엑스포 대표이사는

- ①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고,(주 의)
- ② 부적정 하게 정산된 맞춤형 복지점수 0,000천원을 회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 정)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소 관 청 문화엑스포
관 계 부 서 ◆◆◆◆◆ 외
내 용

(재)문화엑스포에서는 「여비규칙」에 따라 임직원 및 법인의 업무로 여행하는 자의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법인의 여비에 관한 업무 중 이 규칙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다.

「공무원 여비 규정」 제8조의2 및 제31조(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에 따르면 국내 여행자 및 국외 여행자가 여비 중 운임과 숙박비를 결제할 때에는 「국고금관리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정부구매카드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하고,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서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신청을 받은 회계 관계 공무원은 여비의 정산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여비를 정산하도록 되어 있다.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84호)의 근무지외 국내 출장 시 여비 기준에 따르면 근무지 외 출장 시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가 지급되며, 출장자는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출장지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결제한 신용카드 영수증, 주차영수증 등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장을 이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갖추도록 되어 있다.

또한 2인 이상의 공무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하는 경우에는 1대의 차량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자가용 동승자에게는 연료비 및 통행료, 주차료 등의 운임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다만, 출장목적 수행 상 불가피한 사유로 2대 이상의 차량을 이용한 경우에는 차량 이용에 대한 증거 서류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문화엑스포 「여비규칙」에는 위와 같은 규정이 정비되어 있지 않아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준용하여 여비를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문화엑스포 임직원 및 법인의 업무로 여행한 자가 여비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서 정한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등 구체적인 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지출담당자는 증빙서의 적정성 여부 및 집행의 적정성 등을 검증한 후 지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문화엑스포는 0000년 상반기 00건의 근무지 외 출장여비 0,000천 원을 지급하면서 지출결의서에 운임 영수증 등 증빙서를 첨부하여야 함에도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출장지 소재 주유영수증 등 구체적인 증빙 없이 출장여비를 집행하였다.

조치할 사항 문화엑스포 대표이사는

앞으로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무원 여비 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주 의)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병가 승인 및 사용 관련 복무 관리 소홀
소 관 청 문화엑스포
관 계 부 서 ○○○○○○○○○○
내 용

(재)문화엑스포는 「근무규칙」에 따라 근무하는 직원의 근로조건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허가권자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등의 사유가 있는 직원에 대하여 연 누계 1월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하고 있다.

문화엑스포 「근무규칙」 제21조에 따르면 병가일이 7일 이상일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7일 이상의 병가에 대해 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할 때에는 연가를 활용하고, 동일한 사유 여부는 복무기관의 장(허가권자)이 진단서의 내용을 검토한 후 결정하여야 하며, 연가 사유의 고의적 병가처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0000년에서 0000년 기간 동안 임직원의 병가 현황을 확인한 결과, ○○○○○○○○○○ ◇◇●급 ▣▣▣의 경우 ‘▣▣▣▣▣▣▣▣ 치료’ 등 사유로 병가를 사용하였으나, ‘▣▣▣▣▣▣▣▣ 치료’ 사유로 제출한 진단서 외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수차례에 걸쳐 병가를 사용하는 등 총 00회 병가를 사용하였다.

한편 제출한 경위서에서 ‘7일 이상의 병가 사용을 위한 진단서를 매번 발급

받아서 제출하여야 되나, 진단서 미 첨부 건의 병가에 대해서는 ㉠㉠확인서로 대체하였다.’ 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문화엑스포 「근무규칙」에 의거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허가권자는 문화엑스포 「근무규칙」에 따라 임직원이 직무수행 가능 여부와 진단서의 내용을 감안하여 병가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진단서의 내용 확인 없이 병가를 허가하였다.

조치할 사항 문화엑스포 대표이사는

앞으로는 임직원의 복무상황을 면밀히 감독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 의)